
자주하는 질문(FAQ)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대상-

2022. 8. 1.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I	코로나19 질병개요	1
II	재택치료 제도	3
	1. 재택치료 제도 전반	3
	2. 재택치료의 원칙	4
	3. 건강관리	6
	4. 생활관리	9
	5. 격리관리	12
	6. 코로나19 검사	16
III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17
IV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19
V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24
VI	역학적 특성	28
VII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	31
VIII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35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어떤 질병인가요?

- 코로나19는 '19.12.31일 중국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되었고, '20.03.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판데믹, Pandemic) 선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Corona virus-2 (SARS-CoV-2)**로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 첫 발생 이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어 관련 특성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으며 이는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합니다. 상부 호흡기의 바이러스 양은 감염 첫 주 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 코로나19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 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했으며, 비말 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폐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Q2.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청소·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 희석액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5.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6.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7.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고온에서 섬유세탁용 살균제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에서 사용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적절하게 소독액으로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또는 어려울 경우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9.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10.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2.2.9.)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5판) "붙임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 참조

Q1. 왜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 ('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1.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3)

Q2.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더라도 남은 기간은 자가격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3.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Q4.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5.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1. 재택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 재택치료자는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의료기관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택치료를 할 때 의료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①호흡기환자진료센터 ②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3. 환자가 야간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간에 의료상담이 필요할 시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연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택치료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연락처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Q4. 재택치료자인데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할 수 있으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환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Q5.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를 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Q6. 아이가 확진되었습니다. 추가 관리사항이 있나요?

- 소아 재택치료자도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을 통해 **대면진료 및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평상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전화 상담·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https://c11.kr/xl4y> 에 접속하여 「소아재택 치료 증상별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격리기간, 생활지원금 등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 의료적 상담은 의료상담센터, 생활 안내 등 행정상담은 행정안내 센터를 통해 문의

Q8. 양성 확인을 고지 받은 이후 또는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받나요?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직접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세요.
 - 의약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 부득이하게 환자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1인가구, 가족 모두 확진된 경우 등)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전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1.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환기 수칙 〉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Q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URL(<https://c11.kr/wpv5>)을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드립니다.
 - *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인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Q3.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4.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5.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C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 (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Q6.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식기는 어떻게 하나요?

-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Q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함께 격리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 권고 사항을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드립니다.
 - *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인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Q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10일동안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③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 60세 이상자의 경우 2번 모두 PCR 검사 권고
 -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④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재택치료자에게 일괄 통지된 문자는 검사를 받기 전,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시 제시

Q3.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시 마다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용 시마다 소독

Q4. 동거인이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5. 청소년 등의 동거인이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 소아청소년이 동거인인 경우 기관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침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동거인 **등교·등원(출근)**을 제한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6. 재택치료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¹⁾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 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¹⁾(재택치료자): 대면진료, 처방약 수령(이후 즉시 귀가),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기타)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Q7.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 공동격리는 돌봄이 필요한 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은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공동격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소급적용 불허).
-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는 격리장소 내 독립된 공간에서 함께 격리하며 감염병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격리자는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Q1. 왜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검사 역량을 필수적인 곳에 우선 활용하기 위해 우선순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중증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우선적으로 PCR검사를 받도록 하여 빠르고 정확한 감염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필요시 충분히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였습니다.

Q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

-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검체의 종류) 전문가용은 비인두도말 검체, 개인용은 비강도말 검체
- (검사자) 전문가용은 의료인 등 전문가, 개인용은 일반인

Q3.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인쇄된 문서만 인정되나요?

- 증빙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발행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건소·병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된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있는 증명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Q1.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재택치료자가 1인 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 변경된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2.2.9.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이며,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동거인 관리기준

구분	관리방식 및 기간	해제 전 검사	격리 및 감시 해제 시점
재택치료자 (확진자)	확진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 격리 ▶	없음	7일차 24:00 (= 8일차 00:00)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10일차 24:00 (=11일차 00:00)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권고 수칙 : PCR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히,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Q2.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인 확인된 후 당일 생활치료센터(또는 병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동거인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환자의 격리 및 치료장소(재택,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상관 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접촉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격리하며 증상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Q3.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관할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이며 7일이 되는 날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Q4.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

- 2022.2.9.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동거인의 수동감시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이며, **권고 준수 기간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입니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2월 10일 밤 자정(24:00=11일 0시)에 감시기간이 종료됩니다.

Q6.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자정**입니다. 즉, 2월 1일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해제 됩니다.

Q7. 재택치료자는 격리 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이후 격리기간은 관할보건소의 격리통지일부부터 시작하여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해제되며,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해제됩니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초기에는 PCR 검사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검사기반 격리해제를 준용하기도 하였으나, 2.9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는 임상경과기반의 격리해제를 통해 해제되고 있습니다.
 - 이는,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8. 40~50대에서 RAT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증상이 있어 팩스로비드 처방을 위해 PCR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PCR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면, 격리대상이 아닌가요?

-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유증상자가 의사의 판단하에 PCR 검사를 시행 후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면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되므로 팩스로비드 처방 및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Q9.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결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격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양성확진자 격리는 **의료기관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입니다.
- * (예) 3.15.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및 양성확인, 3.21. 자정(24시) 격리해제
- 다만, 보건소의 격리 통지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0.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결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귀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가 시 가능한 한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 신속항원검사 확진 후 귀가를 위한 구급차 이송은 불가합니다.

Q11. 가족이 확진되어 보건소로부터 받은 안내문자를 전달받아 감염여부 확인 검사를 받으려는데,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중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나요?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됩니다.
- ① 재택치료자의 양성통보 및 격리통지 문자를 전달받아 3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은 가급적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단, 진료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② 또한, 수동감시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자가검사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재택치료자는 언제 외출이 가능한가요? 만약 감염되지 않은 자녀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면 재택치료자는 자녀와 함께 동반 외출이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외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본인의 대면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도보나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시 1) 방문하고자 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 확진자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3)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4) **동선을 최소화**하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주차장 포함)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돌봄이 필요한 감염되지 않은 자녀(등)가 진료, 코로나19검사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즉 재택치료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 재택치료자는 감염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으시되, KF94(또는 동급 이상)마스크 착용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료 후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2022.3.1.일부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 를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10일동안의 권고사항 준수기간에는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Q2. 6세 천식이 있는 확진환아입니다. 재택치료 중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 미대상군)는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미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대면진료가 어려울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24시간) 및 기존에 다니던 동네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행정안내센터*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 또는 지자체별 게시판에 홍보

Q4.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와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5.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재택치료자는 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 임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종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에 한합니다.

Q6.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활동에 제약이 없는건가요?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의 권고 및 준수사항]

-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 검사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Q7.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약처방을 받았는데, 귀가 중 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수령해도 되나요?

- 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의 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자는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이용하시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하며, **처방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Q1.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증상은 어떤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증으로 바이러스의 아형(예 : 델타, 오미크론)에 따라 전파력과 중증도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 노출 후 2~14일 후 증상(발열 또는 오한, 기침, 인후통, 숨가쁨, 몸살 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아형에 관계없이 다른 호흡기 감염증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큰 차이는 없고, 미각 및 후각소실은 다른 호흡기감염증과 달리 코로나-19 감염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는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에 비해 인후통은 보고는 좀 더 빈번하고, 미각 및 후각 소실은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감염이 된 경우 감염력이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감염력은 **발병 전 2일~발병 후 3일까지가 가장 높으며 대부분 7일 이후에는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는 7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발병 전에는 이미 전염력이 있어 동거인은 확진 받기 전 이미 노출된 상태이므로 발병의 위험이 높아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Q3.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Q4.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치료 방법은 뭔가요?

- 대부분 경증은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대증치료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시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Q5.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3일 주의 기간에 출근이 가능할까요?

- 재택치료자는 7일간의 격리가 끝난 후 3일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Q6. 재택치료 중에 동거인이 저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동격리자를 제외한 동거인은 다음과 같이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①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 절대 금지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④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등(같은 화장실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후 소독)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감염 위험은 감소합니다.

Q7. 장애인이 확진되었을 때, 담당 요양보호사의 방문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위급상황 및 생활 필수 사항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이때 출입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집안 환기·소독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을 달성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Q8. 임산부의 경우,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 위험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산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감염될 위험은 낮으나,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9배 높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비감염 임산부에 비해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에서도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각국에서는 임산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 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 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먹는 치료제는 누구나 처방·투약 가능한가요?

-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가 해당 약제의 투여대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투약이 가능합니다.
 - ☞ 먹는 치료제 투여는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팍스로비드) 위의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의료진은 ▲신장, 간장 질환 정도, ▲ 현재 복용중인 약제(일반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이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진을 통해 투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처방·조제 됩니다.
 - ☞ 병용 금지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라게브리오’는 투여 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임부, 수유부 및 가임기 여성과 남성 에게는 처방·투약 제한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이 약은 임신 중에는 투약하지 않습니다. ▲수유를 하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중 및 마지막 투여 후 4일간은 수유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임기 환자(여성)에게는 이 약 투여 중 및 마지막 투여 후 4일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임기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는 환자(남성)에게 이 약의 투여 중 및 마지막 투여 후 3개월 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

I 파크로비드			I 라게브리오		
공동사항	12-59세	60세 이상	공동사항	18-59세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 산소포화도(SpO2)가 낮은 환자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 산소포화도(SpO2)가 낮은 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60세 이상
	거저질 환자 ¹⁾	거저질 환자 ¹⁾		거저질 환자 ¹⁾	거저질 환자 ¹⁾
	면역저하자 ²⁾	면역저하자 ²⁾		면역저하자 ²⁾	면역저하자 ²⁾

- 1) ①현재 중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등
- 2)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 30kg/m² 이상) ▲면역억제성 질환 또는 면역억제 치료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장애

Q2. 무증상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먹는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3. 확진된 시점에는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증상 상태라면 먹는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확진 당시 증상이 있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판단하여 먹는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재 무증상자라면, 의사가 약의 투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Q4. 증상발생 후 5일이 지난 자도 먹는치료제 투여가 가능할까요?

○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가 시작되도록 긴급사용 승인된 제품입니다. 증상발생 후 5일이 지난 경우 적응증 대상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코로나19 재감염자도 먹는 치료제 투여가 가능한가요?

-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자에 해당하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무증상자 제외)하면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먹는치료제 복용 후 회복한 환자라 하더라도, 재감염이 인정되면 먹는 치료제를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재검출 사례로 판정된 환자는 투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6. 먹는치료제의 복용을 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먹는치료제는 **매일 아침·저녁(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5일간 총 10회분**을 복용 중단 없이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편, 약 복용을 잊은 경우,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



- ☞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지 **8시간 이내인 경우, 바로 복용**하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복용을 잊은지 8시간을 초과한 경우, **농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 ☞ (라게브리오) ▲복용을 잊은지 **10시간 이내인 경우, 바로 복용**하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복용을 잊은지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농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

Q7.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현재 처방 가능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아래 표 참조)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처방기관은 동일함

< 먹는 치료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 >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비고
재택치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원외처방),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요양·정신병원	요양정신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병원 (요양, 거점 포함)	감염병전담(거점, 요양)병원(원내처방)	감전병원 해제시에도 수요 요청 시 원내공급 유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종합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내처방, 원외처방) 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Q1. 재택치료자가 진료 및 약 처방을 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나요?

-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진료시(대면, 비대면) 법정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약 처방시에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다만 먹는 치료제에 대한 약값은 계속 지원됩니다.

Q2.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동거가족 등 동거인(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의 의약품 수령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하여 **환자 본인이 직접 의약품을 수령시, 도보나 개인 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처방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 ※ 부득이하게 환자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1인가구, 가족 모두 확진된 경우 등)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전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